

코로나19 과학기술·ICT 지원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5.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9호, 2022. 5. 1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2-444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코로나19 예방대응 및 모니터링 등 현안에 대하여 책임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과학기술·ICT지원반"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코로나19 과학기술·ICT지원반"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 "코로나19 과학기술·ICT지원반"은 장관 밑에 두며, 코로나19 예방대응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되, 비상안전기획관이 반장을 겸임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코로나19 과학기술·ICT지원반"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코로나19 과학기술·ICT지원반"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한다.

제3조(기능) "코로나19 과학기술·ICT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및 산하·소속기관의 예방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2. 코로나19 관련 예방, 진단, 치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ICT 기술 적용·접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및 산하·소속기관의 모니터링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주야근무 대응체계 관리에 관한 사항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범부처 협력대응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련 긴급현황의 대응 및 동향·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코로나19 과학기술·ICT지원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반장은 "코로나19 과학기술·ICT지원반"의 업무를 총괄하며, 반장을 보조하기 위해 "코로나19대응과"를 둔다.
- ③ 코로나19대응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 ⑤ 반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0조에 따라 소속 반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반장은 필요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검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반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코로나19과학기술·ICT지원반"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99호,2022.5.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